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3. 7. 12.  
사회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: 2013년 6월 26일
- 나. 발 의 자 : 최재문 의원 외 4명
- 다. 회부일자 : 2013년 7월 1일
- 라. 상정일자 :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 
(2013년 7월 5일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 : 최재문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위원회 위원의 제척·회피 규정 신설(안 제5조의2)
-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규정 신설(안 제5조의3)
- 위원회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6조제2항~제4항)
- 위원회 회의록 공개일 및 공개방법 규정 신설(안 제8조제2항, 안 제8조제3항)
- 과태료 부과징수 조문 삭제(안 제16조)
-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조문 정비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태선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내용을 보면  
위원회 위원의 제척·회피에 관한 사항과 해촉사유 규정을 신설하고,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 및 자문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요청 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또한 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공개를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고 회의록 공개방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시함.
-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“2012년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” 권고사항과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그 밖에 사항은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  
다만, 안 제16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조문의 삭제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39조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에 근거하여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본 조례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수정안 요지

#### 가. 수정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

#### 나. 주요 골자

- “제16조(과태료의 징수절차)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” 신설
- 별표 1 삭제

### 5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26	관 련 호
----------	-----	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3. 7.

제 출 자 : 오현숙 위원 외 1명

## 1. 수정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

## 2. 주요골자

- “제16조(과태료의 징수절차)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” 신설
- 별표 1 삭제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과태료의 징수절차)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별표 1은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u>&lt;삭 제&gt;</u>	<u>제16조(과태료의 징수절차) 영 제134조</u> <u>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u>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3년 6월 일

발의자 : 최재문의원 외 명

## 1. 제안이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위원의 제척·회피 규정 신설(안 제5조의2)

나.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규정 신설(안 제5조의3)

다. 위원회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6조제2항~제4항)

라. 위원회 회의록 공개일 및 공개방법 규정 신설

(안 제8조제2항, 안 제8조제3항)

마.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문 삭제(안 제16조)

바.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조문 정비

## 3. 개정안 : “별첨”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 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 
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 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도시계획과, 총무과
- 라. 기 타 : (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  
(2) 입법예고(2013. 6. 20 ~ 6. 25) 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”로 한다.

제1장의 제목 “총 칙”을 “총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동법률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, 동법률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”를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영등포구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”로, “법 제3조”를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구 도시계획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”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법, 영 또는 이 조례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”를 “법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”를 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

제4조제1항 중 “1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”를 “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1에 해당하는 자”를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2이상”을 “2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있는 자”를 “있는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잔임기간”을 “남은 기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 중 “1인과 서기 약간인”을 “1명과 서기 1명”으로, “담당주사가”를 “담당팀장이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각각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59조에 따른”으로, 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120조에 따른”으로, “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영 제20조제2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영 제25조제4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각호외”를 “각 호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9인 이상 13인”을 “9명 이상 13명”으로, “2이상”을 “2 이상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위원의 제척·회피)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.

1.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이 해당 심

의·자문 대상 안전과 관련하여 직접·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심의·자문 대상 안전과 관련하여 용역·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
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5조의3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 다만,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1.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
2. 위원이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

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

4. 위원이 제5조제2항에 따른 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
제6조 제목 “자료제출의 요구 등”을 “자료제출 및 제안설명”으로 하고,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, 제4항

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 등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 및 자문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④ 구청장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 및 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 중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구청장은 법 제113조의 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(단,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)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”을 “대해서는 예산의 범위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116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.”를 “「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 규칙」에 따른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”을 “대해서는 예산의 범위”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보 칙”을 “보칙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10조에 따른”으로,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」례에 의한다.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」에 따른다.”로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과태료 부과·징수) <삭 제>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</u>	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</u>
제1장 총 칙	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, 동법률시행령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, 동법률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 이라 한다)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</u> 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) <u>영등포구(이하 “구” 라 한다)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·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.</u>	제2조(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)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</u> ----- ----- 「 <u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</u> 」 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3조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기능) <u>구 도시계획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u>	제3조(기능)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</u> ----- ----- <u>각 호</u> -----.
1. <u>법, 영 또는 이 조례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</u>	1. <u>법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」 (이하 “영”</u>

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	<u>이라 한다</u> ) 또는 이 조례에서 <u>위원회의</u> ----- ---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<u>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</u>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	3.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</u> ----- ----- -----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5. <u>기타</u>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	5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
제4조(구성 및 운영)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<u>1인</u> 을 포함하여 <u>25인이내</u>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4조(구성 및 운영) ①----- ----- <u>1명</u> 을 포함하여 <u>25명 이내</u>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<u>1</u>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<u>2이상</u> 이 되어야 한다.	③----- <u>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2 이상</u> -----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토지이용 · 건축 · 주택 · 경관 ·	3. -----

<p>교통 · 환경 · 방재 · 문화 · 정보 통신 · 도시설계 · 조경 등 도시계 획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 험이 있는 자 19인 이내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있는 사람 19명 -----</p>
<p>④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<u>잔임기간</u>으로 한다.</p>	<p>④----- ----- ----- . ----- ----- 남은 기간----- .</p>
<p>⑤ ~ ⑧ (생략)</p>	<p>⑤ ~ ⑧ (현행과 같음)</p>
<p>⑨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인을 두되,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 하는 과의 과장이 되며, 서기는 위 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<u>담당주사</u> 가 된다.</p>	<p>⑨----- 1명과 서기 1명- ----- ----- ----- 담당팀장이 ----- .</p>
<p>⑩ (생략)</p>	<p>⑩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분과위원회) ①위원회는 영 제113조 <u>각호</u>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<u>각호</u>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	<p>제5조(분과위원회) ①-----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 .</p>
<p>1. 제1분과위원회 : <u>법 제59조의</u> <u>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</u> <u>항과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</u> <u>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</u> <u>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</u> <u>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관한</u></p>	<p>1. ----- <u>법 제59조</u> <u>에 따른</u> ----- <u>법 제120조에 따른</u> ----- ----- <u>영 제20조</u> <u>제2항에 따른</u> ----- -----</p>

<p>사항의 사전자문</p>	<p>-----</p>
<p>2. 제2분과위원회 :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심의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이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토록 지구단위계획결정된 사항에 대한 심의</p>	<p>2. -----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②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항 각호외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</p>	<p>②----- ----- <u>각 호 외</u> ----- -----.</p>
<p>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9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.</p>	<p>③----- ----- 9명 이상 13명 ----- ----- ----- 2 이상 ----- -----.</p>
<p>④ ~ ⑥ (생략)</p>	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5조의2(위원의 제척·회피) ① <u>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.</u> 1. <u>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이 해당 심의·자문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.</u></p>



	<p><u>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p> <p>2. <u>위원이 해당 심의·자문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·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</u></p> <p>② <u>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회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5조의3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 다만,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1. <u>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</u></p> <p>2. <u>위원이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</u></p>

	<p>3. <u>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</u></p> <p>4. <u>위원이 제5조2제2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</u></p>
<p><u>제6조(자료제출의 요구 등)</u>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<u>풍부한</u>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6조(자료제출 및 제안설명) ①</u> 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<u>풍부한</u>  <u>사람</u>-----.</p> <p><u>②</u> <u>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 등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</u> <u>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 및 자문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</u> <u>구청장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 및 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제8조(회의록)</u>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<u>2인</u> 이하의 속기사로 하</p>	<p><u>제8조(회의록) ①</u>-----  ----- <u>2명</u> -----</p>

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.	-----.
<신 설>	② 구청장은 법 제113조의 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 (단,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)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.
제9조(수당 등) 구청장은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속기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9조(수당 등) ----- ----- 대해서 는 예산의 범위----- -----.
제10조(설치 및 기능)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(이하 “기획단” 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	제10조(설치 및 기능) ① 법 제116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.
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	② ----- 각 호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기타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	4. 그 밖에 ----- -----
제11조(기획단의 구성) ① (생략)	제11조(기획단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.	② ----- 범위----- -----.

<p>제13조(임용 및 복무 등)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·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.</p>	<p>제13조(임용 및 복무 등) ①----- ----- 「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 규칙」에 따른다.</p>
<p>② 기획단위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②----- -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----- -----.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장 보칙</p>	<p>제3장 보칙</p>
<p>제15조(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)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」에 의한다.</p>	<p>제15조(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)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10조에 따른 ----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」에 따른다.</p>
<p>제16조(과태료 부과·징수) ① 법 제1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②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. 다만 다른 법규에 별도로 징수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.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</p>	<p>&lt;삭 제&gt;</p>

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  
징수 규칙을 준용하는 경우 납입고  
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  
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.